선거명	제19대 대통령선거							
후보자명	심 상 정	심 상 정 기호 5 소속정당명 정 의 당						
공약순위: 1	촛불혁명 완수하는 국	·민주권	형 정치기	H 혁	공약분야	정치·행정자치 ·사법윤리		

○ 목표 : 국민주권형 정치개혁, 과감한 자치분권, 안전사회로 전환, 검찰개혁과 사법정의 실현으로 촛불시민혁명 완수

○ 이행방법

1. 국민주권형 정치개혁

- ① 국민소화제, 국민발안제, 국민투표 대상 확대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
- ② 국민 뜻대로 의석배분 〈연동형 비례대표제〉 도입과 대통령 ·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
- ③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, 피선거권은 대통령 35세, 국회의원·지방자치단체장 23세, 지방의원 18세로 하향조정, 정당가입 연령 폐지, 교육감 선거연령 16세 등 청소년 참정권 확대
- ④ 선거일 유급휴일화와 투표시간 연장, 사전투표 확대 시행, 정당기호순번제 폐지, 공직후보자 기탁금 대폭 인하 등 선거참여 확대와 선거의 공정성 제고
- ⑤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, 시민참여 의원징계제도 도입, 영수증 필요 없는 문지마 예산 〈특수활동비〉폐지, 상시국회 도입·예결특위 상임위화, 교섭단체제도 폐지
- ⑥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 소속 정당의 해당 선거 공천 금지 및 선거비용 50% 부담 법제화, 시·군·구당 복원, 정당후원회 설치 허용,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
- ⑦ 교원·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, 여성할당제 의무화로 여성정치 활성화, 장애특성에 맞는 선거정보 제공으로 장애인 참정권 보장, 온라인 정치참여 플랫폼 구축과 활성화

2. 과감한 자치분권과 행정개혁 실현

- ① 지방소비세는 20%,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24.24%로 단계적 확대해 지방재정 확충 등 재정분권 강화
- ②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 강화, 지방의회 강화로 지방자치 활성화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무체계 개선과 과감한 사무이양, 광역·기초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과 자치경찰 관련 주민 참여와 통제 확보
- ③ 지방의회 비례의석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
- ④ 주민직접참여제도 요건 완화와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자치회 직선제 도입 · 의결기구화
- ⑤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 추진
- ⑥ 정부 특수활동비 대폭 축소와 통제장치 마련. 청탁금지법(김영란법)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제 도입
- ⑦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고 성과감사 중심으로 개편, 감사원장의 독립성 보장

3. 세월호 진상규명 등 안전사회로 전환

- ① 2기 세월호특조위 구성, 철저한 진상규명과 세월호 교훈을 담은 안전사회전환특별법 제정
- ②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격상. 산하에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외청으로 재편
- ③ 청와대가 안보 및 재난 통합콘트롤타워로서의 위기관리센터 기능을 복원하고 강화함
- ④ 소방공무원 2만명 증원, 국가직으로 전화해 소방공무원 처우개선과 소방대응장비 지원 강화
- ⑤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 및 위험업무 정규직화, 산재사망 및 재난사고 처벌강화 특별법(기업살인법) 제정,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사회보험 기능 강화
- ⑥ 화학물질정보 지역사회 공개 의무화.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민·관·산 협력체계 구축
- ⑦ 핵발전소지역에 지역원자력규제위원회 설립. 지진 등 재난 대비 방사능 비상대응체계 구축
- ⑧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기본법 제정, 주택안전기준 강화, 전통시장 화재안전대책 마련
- ⑨ 원재료기준 GMO완전표시제 실시, 방사능오염 먹거리 규제, 모든 식품첨가물 표시 의무화

4. 검찰개혁과 사법정의 실현

- ① 대법관 추천 과정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 폐지,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자·추천사유 등 공개,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법학교수 및 법률 전문가의 대법관 후보 자격 인정
- ② 대법원장 인사권을 고등법원장에게 분산, 평판사의 인사위원회 참여 제도화로 인사 공정성 확보
- ③ 모든 헌법재판관 국회 동의 절차 의무화, 국회〈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〉설치, 헌법재판관 중 판사와 검사 출신 인원 제한, 변호사가 아니어도 법학교수 및 법률 전문가 헌법재판관 자격 인정
- ④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 사건 전담을 위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(수사권·기소권 부여)
- ⑤ 지방검찰청장 주민직선제와 소속검사 인사권 부여, 재임용 금지로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근절
- ⑥ 몰래변론 금지 및 공직퇴임 변호사의 사건수임 제한기간 연장, 신고 대상 확대로 전관예우 근절
- (7) 황제노역 폐지(노역일당 최대금액 설정, 유치기간 최대 5년), 유치일수 초과해도 벌금액 비면제
- ⑧ 특정 범죄 및 피해 수준. 범죄 횟수 등을 기준으로 경찰 수사권 부여 등 검경수사권 조정
- ⑨ 평시는 군사법원 폐지하고 전시 및 해외파병 시에만 보통군사법원 설치, 관할관 확인조치권과 심판관 제도 폐지, 군검찰관 군판사 법무장교 순환보직제도 폐지로 군판사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
- **이행기간**: 임기중(2017~2022년)
- 재원조달방안 등 : 별도 증액 예산 불필요

선거명	제19대 대통령선거							
후보자명	심 상 정							
공약순위: 2	튼튼한 안보, 적극 평화공영		화외교로	공약분야	통일외교통상 · 국방			

○ 목 표 : 평화·공동번영을 위한 적극적 평화전략, 자주국방과 안보 민주화 실현 공정하고 정의로운 협력적 통상 협정

○ 이행방법

1. 평화번영을 위한 적극적 평화전략

- ① 사드배치 철회, 북 핵·미사일 동결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, 비핵화 6자회담-평화협정 4자회담 병행 추진, 남북정상회담 추진, 한반도 평화선언을 위한 4국 정상회담 추진, 비핵화 완수-평화협정 비준-북·미와 북·일 수교-동아시이안보협력기구 상설화
- ② 남·북·일 3국에 대한 미·중·러 3국의 안전보장과 핵군축, 동북아 외교·국방·경제 협의체 상설화
- ③ 한·미·중 정상회담과 전략대화, 6자회담 재개와 지역 차원 다자안보협력 강화, 북한 사회간접자본 (SOC) 및 특구 등 개발에 국제적 참여 유도, 철도와 도로, 가스관 등의 중국·러시아 연결, 한일 해저터널
- ④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, 불평등한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(한미SOFA) 전면 개정
- ⑤ 12.28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 무효 선언 및 재협의 추진, 과거시에 대한 확실한 반성을 전제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정립, 일본 평화헌법 수호를 위한 다차원적 외교
- ⑥ 공적개발원조(ODA) 증액, 국회의 파병동의권을 제한하는 현 평화유지군(PKO)법 등의 위헌적인 요소 개정
- ⑦ 재외동포 정책 총괄 재외동포청 설치, 재외국민에 대한 포괄적·적극적 보호대책을 규정하는 재외국민 보호법안 제정
- ⑧ 개성공단 재개,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와 그 종사자들에 대한 실효적 지원
- ⑨ 남북 교류협력을 차단한 〈5.24조치〉 해제, 금강산 관광 시업 재개와 이산기족 상봉의 정례화·상설화, 남북 상생 협력 사업의 재개
- ⑩ 〈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〉 체결, 민간과 지자체의 교류협력 자율성 보장 및 남북관계 불가역화를 제도화, 개성공단 사업의 2·3단계로의 확대와 북한 내륙지역과의 경협 재개 → 철도와 도로의 연결,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, 북한 특구와 연계된 제2·제3 개성공단의 건설
- ① 남북 철도·도로·해운·항공 협력 및 유라시아 대륙과의 교통·에너지 인프라 연결, 환황해 경제권, 환동해 경제권 형성, 북한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(AIIB) 등 국제 금융 및 경협 기구 기입 추진, 남북협력 기금 확충
- ② 단계별〈과정으로서의 통일〉재개(1단계: 당국회담 및 민간교류 확대, 2단계: 정상회담 개최, 장관급 회담 정례화, 민간교류 자율성 제고, 3단계: 상주대표부 설치, 남북 각급 회의 정례화 및 민간교류 전면 자유화)

2. 자주국방과 안보 민주화 실현

- ① 전작권 조기 환수, 기무사령부 해체와 합참 정보본부 신하 방첩부대로 재편, 유사·공통 기능 수행 부대 통폐합
- ② 〈한국형 모병제(의사 모병제)〉 도입, 〈정예 직업 예비군제〉 도입, 기존 병력중심의 선(line) 방어개념을 현대전 방식으로 전환하고 무기 현대화, 아웃소싱 분야(군수지원, 의료복지 등) 민간 이관 추진, 민·관·군 합동으로 「핵심기술개발청」 신설
- ③ 문민 국방부 장관 임명, 대통령 직속의 국방개혁 전담기구 설치, 평시 군사법원 폐지
- ④ 사병급여 최저임금의 40% 이상으로 인상, 유급 보전 없는 예비군훈련 참가자에게 최저임금 보상비 지급
- ⑤ 여군 보직 및 경력 관리의 유리천장 제거, 여군에게도 전투병과 지휘관 기회 제공, 여군 비율 상향 조정, 군 내 성폭력 발생 시 원아웃 제도 시행 및 성범죄 예방 강화, 성폭력 및 성희롱 근절을 위한 전문 인력 마련
- ⑥ 「군 피해자보호법」 제정, 「군 피해 치유 지원 전담센터」 설립, 고졸자 입영대기기간 최소화 위해 병역판정검사 연령 인하(현행 만 19세~만 18세), 군 복무 예약제와 사단별 모병제 실시, 군에서 기술과 교육훈련 기회 제공, 중대 단위 병사위원회 신설

3. 공정하고 정의로운 협력적 통상

- ① 한미자유무역협정(FTA) 등 그동안 체결했던 자유무역협정(FTA)이 국민경제, 인권 등 사회전반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고, 인력 확보 및 관련 정보 공개(유럽은 인권영향평가를 의무화). 통상절차법을 민주적으로 개정
- ② 농축수산업 등 특정 산업이나 특정 계층의 희생을 전제로 한 불공정한 무역협정은 개선하고, 무역이득 공유제 등 통상 재분배 기능 강화
- ③ 한미자유무역협정(FTA) 재협상 시 국내 시법권을 인정하지 않는 투자자 국가 소송제(ISDS) 조항 폐지하고 서비스 시장 개방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변경, 한미자유무역협정(FTA)에 대한 양국 국내법 과의 지위 차이를 동등하게 시정
- ④ 한번 개방하면 되돌리지 못하는 래칫시스템을 개정, 정책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항은 폐지하고 미국의 반덤핑 관세장벽은 개선, 한미자유무역협정(FTA)로 인해 피해를 본 산업이나 특정 계층과 관련한 협정 재협상
- ⑤ 포괄적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되, 포용적 경제협력을 원칙으로 국가간의 국익과 상호호혜 원칙 준수. 식품안전을 위한 농산물 검역, 쌀 수입 쿼터, 수급안정을 위한 국영무역제도 등 농산물시장 개방은 제외하고, 투자자—국가소송제(ISDS) 등 주권침해 소지 조항은 삭제
- **이행기간** : 임기중(2017~2022년)
- **재원조달방안 등** : 사회복지세 도입,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(조세공약 참조)

선거명	제19대 대통령선거							
후보자명	심 상 정	심 상 정 기호 5 소속정당명 정 의 당						
공약순위: 3	조세개혁과 재벌개혁	등 정의	의로운 경	제	공약분야	재정경제		

○ 목 표 : 조세정의로 안정적 복지재원 마련, 재벌 불공정 행위 근절 등 재벌개혁 서민 가계부채 대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. 지역균형 발전 실현

○ 이행방법

1. 부자증세와 불로소득 과세로 조세정의 실현

- ① 복지에만 사용하는 목적세인 「사회복지세」를 신설 소득세, 법인세, 상속증여세, 종합부동산세 납부 액의 일정 비율(10~20%)을 부가(surtax)하는 방식으로 복지재정 확충(연 21,8조원)
- ② 「법인세」최고세율을 25%로 회복, 사내유보금중 이자배당임대양도 소득 법인세에 10% 할증 과세, 조세특례의 최저한세율을 10-15-20%로 상향(연 10.6조원)
- ③ 소득세율 6-15-25-35-45 체계로 개편해 누진 강화,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액을 1,000만원으로 하향,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하향,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누진세율 적용, 파생상품에 대한 별도세율 적용 폐지(연 14,0조원)
- ④ 부동산보유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80%로 인상, 종합부동산세(국세→지방세)로 일원화하고, 세율은 이명박 정부 감세 이전 종부세 수준으로 인상,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전환 (연 16,0조원)
- ⑤ 상속공제한도 5억원으로 축소, 가격폭등 시 증여세 재계산, 세대생략 할증과세 50% 적용(연 1.5조원)
- ⑥ 초과이악공유제 기업 공유이익의 30% 세액공제, 비정규 노동자 차별시정 등 처우개선 시 세액공제 확대,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확대 및 일몰 연장
- ⑦ 월세 비용과 서민 이사비중개수수료 15% 세액공제, 배기량 2천cc미만 승용차 개별소비세 폐지
- ⑧ 부담금 징수 단가 현실화, 원인자·수익자 부담의 원칙 강화, 탈세기업 및 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및 정부조달 참여 배제, 부정당 입찰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 삼진아웃제 강화
- ⑨ 국민소송법 제정, 대규모 예산사업에 대해 국민참여예산제 도입, 국가재정정보 상세 공개, 증액예산 요청 의원 실명제 도입 및 쪽지예산 근절,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록 공개

2. 정경유착 및 갑질 근절 등 재벌개혁

- ① 범죄수익 환수, 전경련 해체, 불법 재벌총수 처벌 강화 등으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근절
- ② 집중투표제, 전자투표제, 다중대표소송제,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및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 제한, 노동자 추천 이사 도입,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을 법제화 등 지배구조 개선
- ③ 순환출자 해소, 지주회사 요건 강화,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, 기업분할명령제와 계열분리명령제 도입

- ④ 보험사 자산운용비율 산정기준을 취득기액에서 시가로 변경, 계열사 주삭채권 보유한도 기준 강화, 은행·보험사의 의결권 한도 현행 15%에서 5%까지 낮춰 금산분리 강화
- ⑤ 하도급법은 물론 공정거래법 상의 모든 불공정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,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
- ⑥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증여세 강화, 규제대상 요건 인하, 일반집단소송제, 소비자 피해구제명령제,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

4. 4대 발전전략과 지역 균형발전

- ① 전기자동차·충전인프라·에너지저장장치(ESS) 등 미래산업 분야, 태양광·풍력·스마트그리드 등 재생에너지산업 인프라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. 미래산업 분야 연구개발(R&D)에 정부 투자, 지원
- ② 제조업의 재부흥 전략으로서, 「첨단제조업화」과 「제조업의 서비스화」 전략 추진
- ③ 경제시스템을 재벌중심의 수직적 기업결합 위주에서 중소기업간 수평적 네트워크 경제로 전환, 중소기업 클러스터와 풀뿌리 시회경제를 구축
- ④ 남북간 경제협력강화협정(CEPA) 추진 남북 경제협력강화협정으로 신평화경제시대 개막
- ⑤ 시군구별 중소기업지원센터 설립, 지역금융활성화법 제정, 지방은행이 없는 광역시도에 〈도민은행〉 및 〈사회연대은행〉 설립(이사회에 중소상공인, 시도민, 우리시주조합 등 지역주민 대표의 참여 보장)
- ⑥ 광역상수도 보급체계 구축(지방 상수도 보급률 80%), 중소도시 지역난방 및 도시가스 공급 기반 구축, 농어촌 마을하수도 확충,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, 농어촌 지방도 보행로 확보

5. 가계부채 대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

- ①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최고이자율 20%로 인하, 이자 총액이 원금을 넘지 못하게 이자제한법 개정,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의 매각 및 부활금지 법제화, 주택담보대출의 유한책임대출화
- ② 채무자에게 연대보증 요구행위 금지. 비영리법인. 사회적기업을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 허용
- ③ 개인워크아웃과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감면률 확대, 사고 또는 질환, 사망으로 노동력을 상실해 채무상화능력을 잃은 경우 잔여채무의 전부 면제 또는 일부 면제
- ④ 개인회생 변제기간 원칙적으로 최대 3년으로 단축(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대 5년), 파산절차에 중지명령제 도입, 압류금지 생계비 중액, 면책대상채권 범위 및 면제재산 금액 확대
- ⑤ 금융기관연체자 신용상담 안내의무,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,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이해상충방지
- ⑥ 금융통화위원회 기관추천제 폐지, 동 위원회를 포함하여 정부의 금융관련 각종 위원회, 이사회 등에 노동자와 시민(금융소비자)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
- ⑦ 한국은행 ·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에 공동조사 요구했으나 2개월 이내 미이행 단독조사 허용
- **이행기간**: 임기중(2017~2022년)
- **재원조달방안 등** : 조세개혁은 다른 공약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임

선거명	제19대 대통령선거						
후보자명	심 상 정	심 상 정 기호 5 소속정당명 정 의 당					
공약순위: 4	고용이 안정되고 차별	이 없는	: 사회 실	실현	공약분야	노동	• 여성(1)

○ 목 표 : 비정규직 정규직화, 고용 안정 및 소득 불평등 해소,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관계 개혁,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환경 개선, 좋은 일자리 확대

○ 이행방법

1.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 해소

- ① 비정규직 〈사용사유 제한〉으로 기간제·사내하청·파견제 등 모든 비정규직의 채용 금지.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모두 고용
- ② 무분별한 간접고용 규제. 불법파견 근절과 외주화 도급화 금지,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법적 책임을 지우고 단체교섭 의무화
- ③ 공공기관과 대기업부터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되, 중소기업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확대
- ④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해 업종별 임금산정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금지하고 적정임금 보장
- ⑤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, 4대 보험 적용은 물론 노동3권 보장. 무자본소유자의 편법적 시업자등록 금지 등 특수고용 제한

2. 고용 안정 및 소득 불평등 해소

- ① 근로기준법상 경영상해고요건 강화, 저성과자 해고 지침 폐기, 비자발적해고 금지, 해고 전 부당한 인사명령 무효화, 〈열정 폐이〉등 불안정 고용과 저임금을 강요하는 노동착취 엄중 처벌
- ② 업종별 임금산정 가이드라인, 임금피크제와 성과급제 지침 폐기, 취업규칙에 〈노사공동결정제〉 도입
- ③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, 가구생계비 포함 최저임금 설정기준의 합리화,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단속 및 처벌 강화
- ④ 고위 임원 최고임금법(민간은 최저임금 30배 이내, 공공은 최저임금의 10배 이내) 도입, 원·하청간 초과이익공유제를 통해 하청·협력업체 노동자 임금 인상에 사용
- ⑤ 장기간 노동착취의 수단이 되는 포괄임금제 금지,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강요되는 노동시간과 휴일근로 및 임금 지급 방식 무효 명시
- ⑥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별 고용 임금실태 공시제 도입
- ⑦ 최저임금 위반 포함 체불임금을 정부가 선 지급 후 구상권 청구, 악성체불업자 징벌적 손해배상

3. 노동기본권 보장 및 노사관계 개혁

- ① 헌법에 노동가치 존중을 명문화, 근로기준법을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, ILO(국제노동기구)의 핵심협약 비준 및 관련법 개정, 교사·교수·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, 정치활동 보장
- ② 특수직고용자 노동자성 등 노동3권 보장, 간접고용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으로 교섭권 보장, 파업 무력화시키는 각종 조치(손배가압류, 업무방해, 직장폐쇄, 대체인력, 부당노동행위)에 대한 시정
- ③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, 노동비자 도입, 초중고 교과에 노동인권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성, 근로감독관 2천명으로 증원, 지방정부에 상설 노동전담부서 설치
- ④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금지. 산별교섭 의무화. 단체협약 효력 확장. 노동이사제 도입

4. 노동시간 단축 및 노동환경 개선

- ①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노동과 1주(7일)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근로(휴일포함)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대로 준수(노동부 불법적 행정지침 폐기). 근로기준법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적용
- ② 연 1,800시간 노동시간상한제, 단계적으로 주 35시간 노동제를 추진해 일자리 나누기와 건강하고 휴식 있는 삶 보장
- ③ 5시 퇴근법(9-5시) 도입, 퇴근 이후 및 휴일 업무지시 제한, 국경일과 공유일 유급휴일화 등 연간 30일 이상 유급휴가를 보장
- ④ 〈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〉제정, 직장 내 지속적인 괴롭힘을 산업재해로 인정, 관련자 처벌, 예방 교육 실시 의무화.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해자 옹호 사용자에 대한 처벌 명시
- ⑤ 감정노동보호법 제정, 사업장 내 감정노동 예방교육 의무화,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및 자살사고 산재 인정
- ⑥ 중소영세사업장 등 모든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, 생명·안전업무의 외주화 및 비정규직 사용 금지, 하청업체 산재에 대한 원청·발주처 책임 강화, 사업장 감시와 산재인정기준 관련 노동자 참여

5. 공공부문 등 좋은 일자리 확대

- ①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개 일자리 창출. 청년고용할당제(공공기관 3→5% 확대, 300인 이상 대기업 5%)로 24만개 질 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
- ② 간호·보육·교육·소방 등 안전업무, 요양 등 사회서비스 및 공공부문 일자리 100만개(창출 및 질 전환)
- ③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등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질 나쁜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로 전화
- ④ 전기자동차 등 미래산업 분야,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산업 분야, 생명농업 분야 등 4차산업 일자리 창출
- **이행기간** : 임기중(2017~2022년)
- **재원조달방안 등** : 사회복지세 도입,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(조세공약 참조)

선거명	제19대 대통령선거						
후보자명	심 상 정	심 상 정 기호 5 소속정당명 정 의 당					
공약순위: 5	여성이 건강하고 행복	한 성평	등사회 4	실현	공약분야	노동	• 여성(2)

○ 목 표 :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, 여성의 기본권 보호, 차별·폭력 없는 성평등사회 실현

○ 이행방법

1. '슈퍼우먼방지법'으로 일생활 균형 실현과 여성경력단절 방지

- 출산전후휴가(현행 90일 → 120일), 배우자 출산휴가제 기간 확대(현행 5일 → 30일)
- ②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(현행 50만원~100만원 → 80만원~150만원/ 통상임금의 40—60%로 인상), 기간 확대(현행 12개월 → 16개월로, 육아휴직 엄마아빠 3개월씩 할당)
-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
- ④ 〈자동 육아휴직 제도 법제화〉로 사내눈치 없는 육아·돌봄 실현. 직장 문화 바꾸기
- (5) 맞벌이 엄마·아빠의 근무시간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확대 제도화
- ⑥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 위한 〈돌봄지원인력센터〉 도입
- ⑦ 일·가정양립 관련법 관리감독 강화, 가족친화인증기업에게 인센티브 확대
- ⑧ 가족돌봄휴가제도 신설과 가족돌봄휴직의 실효성 확보

2. 차별 없는 고용과 질 좋은 일자리 보장

- (1)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별 고용 · 임금실태 공시제 도입, 여성고용기준 미달기업 페널티 강화
- ② 사회서비스공단 설치, 보육, 요양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 임금인상과 수당 현실화
- ③ 감정노동에 대한 사업장 내 예방조치. 인격적인 노동문화 형성. 노동자 보호의무 법제화

3. 한부모 · 장애 · 이주 · 성소수자 · 농민 · 북한여성 등에게 맞춤형 지원 강화

- ① 한부모 임신-출산-산후조리-육아-구직 종합지원체계 마련, 양육비 이행 강제조항 강화
- ② 장애여성 자립생활 기반 마련, 장애여성의 모성권과 건강권 보장 등 의료체계 확립
- ③ 폭력·인신매매·성매매 피해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 수용, 이주여성 체류권 보장, 취업이주여성의 노동인권 보장,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
- ④ 공공기관 및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에 성평등·인권교육 의무화, 동반자 등록법 제정으로 다양한 기족 구성권 보장

4. 차별폭력없는 안전사회 실현

- ① 포괄적 혐오표현, 성차별에 대한 규제 및 차별금지법 제정
- ② 신종 3대 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(한국형 클레어법 도입으로 데이트폭력 대응강화, 스토킹범죄 처벌 특례법 제정,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위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수립,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제정)
- ③ 여성 안심주거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소형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범죄예방환경 설계시설 신설 시보조금 지원 및 세제 혜택 부여, 여성 홈방범서비스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, 여성안심주택 확대

5. 건강권 증진과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화

- ① 외모지상주의 관행 개선을 위해 과도한 미용 성형 산업 규제, 여성인권 침해성 광고 규제
- ② 형법상 낙태죄 폐지,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 허용
- ③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. 여성 건강 종합프로그램 구축 및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

6. 여성대표성 강화와 성평등사회 실현

- ① 남녀동수제 실현을 위한 로드맵 제시. 정당명부 비례제 확대를 통해 여성의 대표성 강화
- ②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로 공기업·공공부문의 고위직 여성참여 확대 및 민간기업의 관리직 여성할당제 제도화
- ③ 성평등한 관점에서의 헌법 개정. 헌법에 남녀동등권의 명문화
- ④ 여성가족부의 성평등부 전환
- **이행기간** : 임기중(2017~2022년)
- **재원조달방안 등** : 사회복지세 도입,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(조세공약 참조)

선거명	제19대 대통령선거							
후보자명	심 상 정 기호 5 소속정당명 정 의 당							
공약순위: 6	농어민·중소상공인 보	호와 서	민주거 역	안정	공약분야	농림해양수산 · 산업자원 · 건설교통		

○ 목표 : 지속가능한 농어업으로 전환,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보호 서민 주거 안정과 교통 공공성 강화

○ 이행방법

1. 지속가능한 농어업

- ① 친환경 농축산물 직불금 1ha당 연 300만원 지급, 유전자변형식품(GMO)의 상업적 개발 금지, 유전자변형식품(GMO) 원료 사용표시 의무화, 방사능 농산물 수입금지
- ② 지역먹거리수급시스템 마련, 친환경 귀농귀촌 지원, 마을농업공동체 생산가공유통 지원, 식품안전 과리체계 농림부 일원화
- ③ 쌀부터 친환경으로 단계적 전면 전환, 주요 농축산물 식량자급 기초농축산물 지정, 단계별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정화, 국가수매 공공비축 확대, 비농민의 소유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제 강화
- ④ 45세 이하 청년취업농 월 100만원씩 정착지원금 최대 5년간 지급, FTA 재협상시 농업부문 시정, 대북 쌀지원과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재가동
- ⑤ 65세 미만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 월 20만원 지급. 논과 밭 고정직불금을 1ha당 연 150만원, 80만원 지급. 직불금피크제 도입해 3ha이상부터 역누진제 적용. 직불금 농가소득 30% 이상
- ⑥ 농민·소비자·정부가 참여하는 농·소·정위원회와 농업회의소 설립,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장 직선제로 선출. 품목별조합연합회를 중심으로 경제시업 전개, 마을공동체기업 지원
- ⑦ 모든 여성농민을 모두 농업경영인으로 등록하고 농민기본소득 및 직불금 50% 등을 직접 지급, 여성 농민 특화사업으로 소득 창출 지원
- ⑧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, 농어촌 혁신초등학교 운영, 중·고등학교에 공립기숙시를 설치, 독거노인 공동 거주 마을공동생활주택 보급,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
- ⑨ 군별 응급의료거점병원을 지정, 농어촌 응급의료서비스체제를 구축, 농부증에 대한 전문적 치료와 함께 건강보험 지원 확대
- ⑩ 노후 연근해어선 기관교체 지원, 어업용 구명조끼 개발 보급, 남북공동어로구역 합의 이행 및 중국 불법조업 공동 대응, 어족자원 보호

2.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보호

① 중소상공인부 신설, 전통떡·빵·김치·순대 등 소상공인의 생계형 업종이나 품목을 고유업종으로 지정 등 현재 74개인 적합업종·품목을 고유업종으로 전환하고 업종 품목 확대

- ② 하도급법의 구매강요, 부당 결제 청구 행위와 공정거래법 상의 모든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 확대 적용,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, 집단소송제 도입
- ③ 하청 및 협력업체기업-원청, 대리점주-본사, 가맹점주-가맹본부가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집단적 교섭제도 도입·강화, 대기업(본청)과 협력업체(하청) 간에 초과이익공유제 실시
- ④ 계획단계에서부터 복합쇼핑몰·대형마트 규제, 대형마트 의무휴일제를 월 4회로 확대, 〈골목상권 지원센터〉 설치, 〈골목상권 상품권〉 발행, 복지포인트 20%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
- ⑤ 청탁금지법(김영란법) 피해 화훼업에 대해 공공조달을 확대하고, 요식업 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해 의제매입 세액공제 확대
- ⑥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1% 상한제, 전용 공공밴 구축, 정책자금 대출 거치기간 연장, 노란우산공제회 기입 지원,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,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중심 개편
- ①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10년으로 연장, 임대료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의 2배 이내로 제한, 도시재생 사업에 〈상가임대차영향평가〉도입. 상가임대차 분재조정위원회 설치

3. 서민 주거 안정 및 교통 공공성 강화

- ① 연간 15만호 이상〈반값임대주택〉공급.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 12% 확보, 국민연금기금 활용 확대
- ②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60%로 확대해. 215만 가구에 주거급여 월 평균 20만원 지급
- ③ 1인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 확대, 사회주택공급 특별법 제정, 대학생 주거수당 월 20만원 지급, 기숙사 수용률 30% 이상 의무화
- ④ 소비자물가상승률 연동 전월세 상한제 도입, 계약기간 3년, 계약갱신청구권 1회 보장으로 6년 거주 보장,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
- ⑤ 임대차등록제 의무화, 지자체 공정임대료위원회가 기존 임대료 및 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공정임대료 산정·공시, 분양가 상한제 확대, 표준건축비 도입, 후분양제(공정 80%) 도입
- ⑥ 보유세 과표산정 실거래가 반영률 인상, 다주택자 전세소득 과세 대상 확대, 월세 소득 분리과세 폐지, 재개발·재건축 개발이익 50% 환수
- ⑦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도입, 직접시공제를 공공공사 전체로 확대하고, 최소 75% 직접시공 의무화
- ⑧ 어르신 무상교통을 버스까지 확대하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보장 무상교통카드 지급, 농어촌, 도서 지역 공영택시 도입하고 지원
- ⑨ 민영화된 수서발 한국고속철도(KTX) 노선과 코레일의 재통합 등 철도의 공공성 및 효율성 강화,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및 대중교통 안전운행 여건 마련과 규제 강화
- **이행기간** : 임기중(2017~2022년)
- **재원조달방안** 등 : 사회복지세 도입,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(조세공약 참조)

선거명	제19대 대통령선거							
후보자명	심 상 정	심 상 정 기호 5 소속정당명 정 의 당						
공약순위: 7	보육, 의료, 노후	보육, 의료, 노후 안심복지 실현 공약분야 보건복지						

- 목표 :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실현
- 이행방법

1. 보육 "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민간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로 안심보육 실현"

- ① 워킹맘 보호하는 슈퍼우먼방지법(출산휴가 1개월 및 육아휴직 3개월 부부할당제, 육아휴직 급여 150만원 인상 및 16개월 보장, 자동육아휴직제, 유연근무제 도입 등)
- ② 26만 명 대기자 해소 등 국공립 확대. 병설유치원 확대. 지역통합형 직장어린이집 확대
- ③ 교사 처우 국공립 수준으로 인상, 친환경 리모델링 지원, 보육거점센터로 민간공공성 강화
- ④ 탄력보육(초과보육) 폐지 및 보육교사 확대로 콩나물반 방지, 우수교사 양성시스템 도입
- (5) 협동조합 어린이집 지원 확대. 공동육아지원센터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공동육아 활성화
- ⑥ 보육119 기급출동. 읍면동마다 보육전담공무원 배치로 아동학대 방지
- ⑦ 어린이집 운영비 직접 교부로 추가경비(특별활동비 · 입학금 등) 없는 진짜 무상보육 실현

2. 의료 "선진국 수준의 건강국가 실현"

- ① 건강보험 보장성 80%(입원진료비 90%, 0~15세 100%), 연간 100만원 병원비상한제 비급여제도 폐지, 건강보험 급여 네거티브 방식(미용 목적의 성형 등만 배제)
- ② 상병수당 도입, 안전한 신의료기술-약제 급여화, 지불제도 개편으로 적정수가 보장
- ③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중심으로 개혁, 민간의료보험 규제 강화
- ④ 중위소득 50%까지 의료급여 확대, 하위 15%가구 보험료 지원
- ⑤ 건강보험 대상 시민(미등록체류자 등)으로 확대, 장애인맞춤형 의료지원, 선진장기요양 구축
- ⑥ 참여형 전국민주치의제(협동조합형·지발적등록주치의 등), 아동치과주치의제 도입
- ⑦ 의원은 1차의료와 전문클리닉으로, 중소병원은 지역거점·전문·요양재활병원 등으로 전환
- ⑧ 동마다 건강증진센터 설치, 읍면 보건지소 강화, 시군구—시도 공공의료복지 허브 구축(시군구 지역 거점병원—재활병원—요양시설 / 시도 '국립대병원—지방의료원' 묶은 특수법인)
- ⑨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수준 보건의료인력 확대, 공중보건인력 확충(정규직), 포괄간호서비스 전면 제공
- ⑩ 방문산후조리, WHO건강증진학교, 산재없는 건강·안전일터, 고혈압 등 만성질환관리 강화
- ① 국민건강부 및 질병관리청·안전보건청 신설. 총리실 산하 국민건강불평등해소위원회 설치
- ②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(특수고용·해외파견·농민·자영업자/중소업체 인허가시 가입강제)
- ③ 출퇴근재해 산재적용. 직업병 인정기준 확대, 의사 직접 산재 청구,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

3. 노후 "누구나 존엄한 노후 보장"

- ① 모든 어르신께 월 30만원 기초연금 지급. 국민연금 가입기간 차별지급방식 폐지
- ②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%로 인상, 양육크레딧 도입 등 사각지대 해소, 국가지급 법 명시
- ③ 은퇴자협동조합 등 노인 일자리 확대와 고령친화적사업장 구축, 근무조건 다양화
- ④ 문화활동 참여, 경륜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개발, 세대간 연대를 위한 봉사바우처 도입
- ⑤ 삶터를 지키도록 주거환경 개선(공공실버임대이파트, 장기요양 주거지원급여 신설 등)
- ⑥ 보편적 방문보건 확대. 장기요양대상과 국공립 확대. 방문재활급여 신설. 소규모시설 확대
- ⑦ 노인차별 금지 및 학대 예방 종합대책 마련
- ⑧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(병원, 평생교육기관 등) 마련
- ⑨ 착한 장례식장(공공병원 반값), 표준장례비용 도입으로 반값장례비 실현

4. 기본복지 "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"

- ①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보장(기초연금 100% 지급,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% 인상)
- ② 건강보험만으로 병원비 해결(병원비 주범인 비급여제도 폐지와 병원비 80% 보장)
- ③ 질 높은 장기요양으로 좋은 돌봄 사회 실현
- ④ 고용보험 확대와 실업부조 도입으로 전국민 고용안전망 실현
- ⑤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로 전국민 산재안전망 보장
- ⑥ 「두루누리사회보험2」로 소상공인·지역가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
- ⑦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
- ⑧ 3대(생계·의료·주거)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로 빈곤사각지대 해소
- ⑨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대(영유아건강, 보육, 장기요양,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확대 및 질 강화)
- ⑩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로 질 좋은 사회서비스 제공.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
- ① 선진국 수준으로 복지인력 확대 및 자치복지 강화
- ⑩ 사회복지세 신설로 복지재정 확충. 책임복지 실현
- ③ 노동복지부 신설 및 노동복지부총리제 실시, 복지국가대전환위원회 설치
- **이행기간** : 임기중(2017~2022년)
- 재원조달방안 등 : 사회복지세 도입,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(조세공약 참조)

선거명	제19대 대통령선거						
후보자명	심 상 정	심 상 정 기호 5 소속정당명 정 의 당					
공약순위: 8	사람중심의 교육혁명과	과학기·	술 · 정보	통신	공약분야		· 과학 보통신

○ 목표 : 살아있는 교육으로 교육혁명 추진,

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혁신, 통신비는 인하, 정보인권은 보호

○ 이행방법

1. 살아있는 교육으로 교육혁명 추진

- ① 유보통합으로 유아 3년 공교육화(교육부) 및 학제 포함, 누리과정 국고지원 및 지원방식 개선
- ② 초6, 중2, 고1부터 한반20명 책임학년,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상위수준으로 한반 학생수 축소, 작은학교 살리기
- ③ 학습종합클리닉센터 2배 확대,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, 학교별 교시별 진단평가 시스템으로 전환,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내실화 및 확대, 비정상 선행학습의 제한
- ④ 일반고 무학년제(선택과목 중심), 옆 학교의 좋은 수업 듣는 교육과정 클러스터 확대, 교육학습경비추가, 국제중 일반중학교로 자사고·외고·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고 특목고 선발시기 후기로 조정
- ⑤ 직업계고 고졸취업장려금 지원, 직업계고 2배,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
- ⑥ 고등학교 무상교육, 초중학교 무상급식 국고지원, 로컬푸드 선순환 시스템 구축
- ⑦ 교육공무직법 제정, 학교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
- ⑧ 시민교육 3종 세트와 노동인권교육,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알바신고센터 설치
- ⑨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, 2019년부터 새로운 검정 역사교과서, 내용 관련 역사 교육과정 개정, 국정· 검정·인정·자유발행 등의 교과서 구분을 법률로 규정
- ⑩ 노후학교 개선 그린스쿨 시업, 교육환경 개선 특별회계 설치하여 석면 제거, 내진 보강, 친환경운동장, 학생화장실, 냉난방기 등 지원, 아토피·천식 안심학교
- ①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학교, 가정형 위(Wee)센터, 위(Wee)스쿨 확대, 전문상담교사 및 학교사회복지사 획충 . 어울림 프로그램 확대,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 내실화
- ② 수능 절대평가, 중학교 내신 온전한 절대평가, 고른기회 대입전형 확대(11%→22%), 주요 대학의 고른 기회와 지역균형 합계 50% / 전형유형을 수능·학생부교과·학생부종합의 3가지로 간소화
- ③ 국공립대 등록금 제로, 사립대는 액수상한 표준등록금제로 등록금 반값.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, 학자금대출 금리 1% 이하, 대학원생도 취업후 상환, 졸업 25년후 상환면책
- ④ 국립대 육성, 대학네트워크 3단계, 대학구조개혁 재검토, 새 강사법 등 시간강사 처우 및 제도 개선 전문대를 고등직업교육 및 평생직업교육 중심 기관으로
- ⑤ 국립대 총장직선제 자율 실시, 초중고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, 초중고 자치기구와 행정실 법제화, 사립학교법 개정, 시군구단위 지역교육장 직선제, 교육미래위원회 신설
- ⑥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·정치기본권 보장, 성과급을 능력개발 수당으로 전환, 세월호참사 기간제 선생님의 순직 인정, 만 18세 선거권(교육감 선거는 만 16세)

2.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혁신

- ①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의 실질적 참여와 정책반영이 보장되는 국기과학기술위원회 구성, 기초·원천 연구 개발(R&D) 비중 확대, 자유공모형 상향식 연구비 비중 확대, 국과위 산하에 전략·정책·규제 특위 설치
- ② 출연연 출연금의 포괄예산 전환, 연구자 인건비 100% 보장, 기업 연구개발(R&D) 수행 시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만 요구. 민간출신 이사장 및 연구자출신 노동이사 1인
- ③ R&D 평가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전문가 참여, 국가전략원천기술 및 핵심부품 자립화, 산학연 전문인 상설협의체 설치
- ④ 출연(연) 연구인력 임금피크제 취소 및 정년 65세로 환원, 여성 과학기술인의 정책연구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대 실시, 여성·고경력(은퇴)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설립 및 청년연구원 확충,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 축소, 대학·출연연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
- ⑤ 창조경제센터를 중기지원센터에 통합, 광역별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설립, 지역 특화대학 지원 및 지역 기업체 지역인재 우선 채용
- ⑥ 상설 연구윤리위원회 설치, 비리 처벌규정 강화, 정부·민간·대학 연구소의 연구비관리 자체 관리 체계 확립, 연구개발(R&D) 부정비리신고센터 홈페이지 재개설
- ⑦ AI · 4차산업혁명 대응 대통령직속 위원회 신설,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미래부 · 교육부 · 대학 · 기업 간 협업체계 구축, 융합교육(STEM)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
- ⑧ 연구개발세액공제를 대기업은 절반으로 축소, 중소기업은 두 배로 확대
- ⑨ 시군구〈우리동네 과학세터〉설치. 광역시도 국립대학에 지역참여연구세터 설치.

3. 통신비는 인하하고 정보인권은 보호

- ① 데이터 2기가 음성·문자 무제한 보장하는〈보편요금제〉출시 의무화, 공공재인 주파수 비용 관련 제도 개선으로 요금 인하,〈통신비심의위원회〉설치, 단말기 값 거품 제거,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 및 제4이동통신 도입
- ② 대통령 직속〈지능정보사회자문위원회〉구성, 규제프리존 추진 중단 및 재벌 특혜 중심의 정보통신기술(ICT) 진흥정책 개선, 녹색경제·환경생태산업과 4차산업혁명 결합, 〈정보통신기술(ICT) 노동 인권센터〉설립
- ③ 개인정보보호 규범 재정립,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 강화,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집단소송제 도입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
- ④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 자료의 전면 무료 개방 등 오픈 액세스 제도화,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확대, 액티브엑스(ActiveX) 등 비표준기술을 없애고 웹표준 도입
- **이행기간** : 임기중(2017~2022년)
- **재원조달방안** 등 : 사회복지세 도입,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(조세공약 참조)

선거명	제19대 대통령선거						
후보자명	심 상 정	심 상 정 기호 5 소속정당명 정 의 당					
공약순위: 9	탈핵생태 사회, 공정한	언론과	문화 국	가로	공약분야	환경 · 문화관광	

○ 목 표 : 한국 탈핵 2040 실현, 국토 환경 치유 및 복원, 동물권 보장 및 동물복지 언론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, 문화예술인 활동 보장 및 지원

○ 이행방법

1. 한국 탈핵 2040 실현

- ① 2040년 원전제로 실현.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, 고리1호기 폐쇄, 신규 원전 백지화, 지진 위험에 노출된 핵발전소 안전성 미확보 시 조기 폐쇄 등 2040년까지 핵발전소 모두 폐쇄
- ② OECD 수준의 전력수요관리로 1000MW급 원전 15기분 감축, 에너지정의세법 제정, 에너지세금 개편 및 산업용전기요금 정상화
- ③ 소형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,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에서 원자력과 석탄화력 등에 대한 지원 폐지 등으로 재생에너지를 OECD 수준으로 확대
- ④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금지. 직접처분 원칙. 고준위핵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총량 결정 후 처리
- ⑤ 방사능오염지역의 모든 식품과 사료, 광산물에 대한 수입규제, 방사능 안전 공공급식법 제정, 방사능 기준치 강화
- ⑥ 국가공공토론법 제정으로 국가공공토론기구 구성, 공청공람제도와 전자공청회 제도 강화, 탈핵에너지 정책목표에 대해 국민투표 실시, 에너지정책에 복수 시나리오 제출 의무화
- ⑦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원자력규제위원회로 개편, 원전과 관련시설 주변 지역에 원자력규제 위원회 설립, 기후적응법 제정으로 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 및 관련대책 수립

2. 국토 환경 치유 및 복원

- ① 헌법에 생명 및 자연의 가치, 지속가능한 발전, 생태복지 등의 개념 포함. 지속가능한 발전법을 제정해 환경 관련법 정비.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 도입 및 환경유해보조금 개혁
- ②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 법정보호지역 확대와 생태계 관리 강화, 남북 환경협력 기반 마련 및 생물다양성 협력체체계 구축, 규제프리존법 중단 및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정책 수립
- ③ 살생물제관리법 제정 등 생활화학제품 독성물질 관리 강화, 취약계층 제품 안전기준 및 관리 강화,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감시체계 구축
- ④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미세먼지 관리.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로 전환, 호흡기 취약계층이나 국가산단 등 집중관리. 동아시아 환경협력 사무국 설치
- ⑤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,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. 4대강 피해조사 및 복원위원회 구성, 4대강 국정조사 및 청문회 개최, 4대강 보 전면 개방 및 순차적 보 철거

⑥ 물기본법 제정, 상수도 민간위탁 또는 민간투자 금지, 수돗물 가격 전국 일원화, 한강하구와 새만금의 생태 보전·복원, 공공수역 관리 예산 확대와 기업책임원칙 강화

3. 동물권 보장 및 동물복지

- ① 헌법에 동물권 명기,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민법 개정, 동물복지법 제정
- ② 참여형 공공동물의료보험 도입(표준수가제 등 적정의료비 산출). 동물화장장 규제 강화 및 화장장 신규 설립시 공공동물화장장 병행 설립, 동물복지주간 신설, 반려동물놀이터 확충,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대, 반려동물 내장형 인식장치 의무화
- ③ 공장식 축산방식을 지속가능한 동물복자농장으로 전환. 감금틀사육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10개년 계획 수립, 축산물 사육환경표시제 전면 도입, 불법도축 금지, 지자체 방역전문인력 획충
- ⑤ 동물원·수족관 관리기준 강화, 해양포유류 전시 및 사육금지, 동물실험 대체·감소·개선을 위한 최신 시험법 채택, 야생 멸종위기종 상업적 이용금지 등 전시동물·실험동물·야생동물 권리 강화
- ⑥ 동물보호국 설치, 911과 같은 동물구조 핫라인 개설 등 동물복지 행정체계 구축

4. 언론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

- ① 언론자유침해 진상규명 및 방송의 공정성 · 독립성 등을 위한 미디어국민주권실현위원회 설치
- ②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강화, 노·사 동수가 참여하는 편성위원회 구성, 종합편성채널 심사항목과 재승인 기준 강화 및 특혜 철폐
- ③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지. 통신 심의는 자율규제로 전환 등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심의제도 개선
- ④ 시청자위원회 기능 강화 및 방송사 노·사 동수 위원 추천, 미디어교육 활성화 지원 및 통합적 미디어 교육 지원체계 구축, 마을미디어공동체 활성화 등 시청자 참여 및 권리 확대
- ⑤ EBS 교육콘텐츠 강화로 맞춤형학습권 보장, EBS O2O(Online to Offline) 평생교육센터 구축

5. 문화예술인 활동 보장 및 지원

- ① 지원사업 공정성 강화 및 공무원의 위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블랙리스트 방지법 제정
- ② 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 개발, 문화예술인 노동기본권 보장, 공공부문 문화예술노동자 정규직화
- ③ 문화예술인 긴급지원제도 도입, 문화예술위원회 전면 개혁 및 문화예술정책의 지방분권화, 정부정책에 문화영향평가 전면화, 문화예술 독립성 강화 및 전문성 보장, 과도한 규제 개선
- ④ 초중고 예체능교육 활성화,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, 학교 예술강사 정규직화
- ⑤ 문화격차 해소, 지역문화시설의 공공성 및 전문성 강화, 지역내 유휴공간 활용, 도시재생사업에 〈상가임대차영향평가〉도입,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제대회 유치 규제
- **이행기간** : 임기중(2017~2022년)
- **재원조달방안** 등 : 사회복지세 도입,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(조세공약 참조)

선거명	제19대 대통령선거						
후보자명	심 상 정	심 상 정 기호 5 소속정당명 정 의 당					
공약순위: 10	아동, 청년, 장애인,	소수자여	에게 희망	-을	공약분야	기타	

- 목표 : 대한민국이 헬조선인 아동. 청년, 장애인, 소수자에게 살만한 대한민국 보장
- 이행방법

1. 아동·청소년 "모두에게 공평한 생애 첫 출발"

- ① 모든 출산가정에 〈임산부・영유아 방문건강관리(간호사방문서비스)〉 제공
- ② 핀란드형 마더박스(최고급의 출산육이종합물품)로 공평한 생애 출발 보장
- ③ 0~15세 어린이 병원비(입원진료비) 100% 국가책임
- ④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(세계 90여개국에서 시행, 아동의 복지권 보장)
- ⑤ 아동학대 예방부터 사후조치까지 종합대책 마련. 스쿨존 내실화 및 확대
- ⑥ 공공 청소년기관·시설 확충과 청소년지도사 의무배치, 문화예술교육 활성화
- (7) 초중고 노동인권교육과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 보호
- ⑧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하향, 교육감 선거는 만 16세로 하향

2. 청년 "흙수저 없는 사회, 버팀목이 되는 든든한 국가"

- ① 청년사회상속제 도입(상속·증여세 약 5조원을 20세에게 사회적 지분급여로 배당)
- ② 병사월급 54만원(최저임금 40%), 군복무기간 6개월로 단축(전방부대 직업군인으로, 징집병사 후방 지원부대에서 근무). 입대예약제(18세 때 예약가능), 사단급부대별 모병제 실시
- ③ 국립대등록금 무상, 시립대는 액수상한표준등록금으로 진짜 반값등록금, 입학금 폐지
- ④ 학자금대출제 개선(금리 1% 이하, 대학원생도 취업후상환대출 적용, 졸업 후 25년 경과시 면책, 35세 미만 개인화생 변제기간 최대 1년으로 단축, 파산선고시 모든 학자금 면책)
- ⑤ 열정페이 근절(인턴제도 폐지. 수습기간 노동자 최저임금 100% 보장)
- (6)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실시(공공기관 3—5%로 확대, 300인 이상 대기업 5% 도입)
- ⑦ 현대판 음서제 근절(공기업 취업특혜 근절, 사립학교·재단 친인척 취업특혜 제한, 청년고용할당시 여성·고졸이하·전문대·지방대 할당하는 기회균형채용제 도입, 표준이력서 도입)
- ⑧ 청년실업부조(15~35세 중 고용보험 미혜택 실업자, 최저임금 50% 지급) 도입, 고용보험 확대(자발적 실업자, 초단시간 노동자 등 포함, 실업급여 요건 완화, 수급기간 연장)
- ⑨ 1인가구 맞춤형주거(1인가구 주거 소형임대주택, 서울시형 장기안심주택 등 도입시 청년 30% 할당, 사회주택 활성화, 1인가구 주거금융 지원), 대학생 맞춤형 주거(기숙사 미배정 대상에게 월 20만원 대학생주거수당, 기숙사 수용률 30% 이상 의무화)

3. 장애인 "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"

- ① 탈시설-자립생활 종합정책 수립 및 OECD 평균 장애인예산 확보(자립정착금 확대, 체험홈·자립주택 등 초기 지원 체계 마련, 국회특위 설치, 장애인 탈시설·자립생활 보장 5개년 계획 수립과 OECD 평균 수준의 장애인예산 확보)
- ②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(가칭) 제정,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도입, 활동 보조인 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,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현실화
- ③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, 공공기관 의무고용률 5% 상향 및 의무고용제 개편, 장애친화공기업 설립 등 장애인 노동권 보장
- ④ 장애인 이동권, 교육권, 주거권(저상버스 100% 및 광역지원센터 설치, 자기운전장치와 차량 개발, 특수교원 확대 및 정규직화, 평생교육시설 확대, 장애인주택개조사업 확대)
- ⑤ 장애인 정보접근권 및 건강권(멀타미디어저작물 접근권 보장, 보완대체의사소통 제도화, 영화관·극장· 관광지 편의시설 보장,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확대, 장애인치과주치의 도입)
- ⑥ 장애여성 종합 지원(장애인정책에 성인지적 관점 적용, 의무고용제 성별 인센티브 확대, 임신·출산· 양육서비스 지원 제도 마련, 장애여성 전담 산부인과 지정 및 지원, 장애여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지원 강화)
- ① 발달장애인·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실질적 인권 보장(장애인차별금지법에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추가,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, 발달장애인 맞춤형 고용지원 및 낮시간 활동지원 확대, 장애인 기족지원과 발달장애인 신탁서비스, 정신장애인 강제입원제도 개선과 권리 옹호체계 수립, 시설장애인 거소투표제 제한 등 참정권 보장)

4. 소수자 "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"

- ① 포괄적 방식의 차별금지법 제정
- ② 동반자등록법 제정(동거노인, 동성커플, 이성커플, 장애인공동체, 비혈연 공동체 등 비결혼 기족에게도 기족의 권리를 보장)
- ③ 공공기관 인권교육 강화,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교육원 설치, 시민사회의 인권위원 추천
- ④ 성소수자 차별금지(HIV감염인 인권보호, 성별변경 조건완화 및 치료지원,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군형법 개정)
- ⑤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등에 대한 대중매체의 차별조장 광고 규제 /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 처벌 강화 / 고용허가제의 인권침해 요인 제거
- **이행기간**: 임기중(2017~2022년)
- **재원조달방안등**: 사회복지세 도입,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(조세공약 참조)